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중 "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"을 "마을회관,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"으로 한다.

제22조제4호중 "영 제95조제1항"을 "영 제95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25조제2호 나. 목 다음에 "다.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"를 신설하고, "같은 조 제3호중 나. 목 내지 마.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바목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나.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
- 다.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
- 라.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
- 마.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
- 바.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
- 사.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

제26조제1항 제2호의 "30일 이내"를 각각 "60일 이내"로 한다.

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,000㎡이하, 기타 지역에서는 2,000㎡이하로서 1981. 4.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(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)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(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)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,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,000㎡ 또는 2,000㎡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